의안 번호	121

제15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2026.10.28.)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심 사 보 고 서



창 원 시 의 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심 사 보 고 서

2026. 10. 28.(수)
문화환경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6. 10. 16.

나. 제 출 자: 창원시장

다. 회부일자: 2026. 10. 20.

라. 상정 및 의결일자: 제156회 창원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2026. 10. 28.) 상정, 질의·답변, 토론, 의결

(의안번호 제121호)

2. 주요내용

가. 제안설명 요지(제안 설명자: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영철)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2027년도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금을 창원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창원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예산편성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7년	2026년	증 감
(재)창원문화재단	21,600,000	19,665,000	1,935,000
재단법인 창원FC	3,121,000	3,121,000	0

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사업)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 제20조(재정 지원)

○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 설립 등)

○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조(설립)

○ 「창원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기본재산 및 재정지원)

○ 「창원시 창원FC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 「창원시 창원FC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운영재원)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3. 전문위원 검토 요지 (수석전문위원 서효인)

○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창원문화재단과 재단법인 창원FC의 2027년도 출연금을 창원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임.

○ 두 기관은 각각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지역 연고 축구단 운영 및 유소년 체육인재 육성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른 출연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기관의 지속적인 운영과 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됨.

□ 창원문화재단

○ 창원문화재단의 2027년도 출연금은 216억 원으로, 이번 동의안에 제시된 2026년도 출연금 196억 6,500만 원 대비 9.8%(19억 3,500만 원) 증가하였음.

○ 재단은 성산아트홀, 3·15아트홀, 진해아트홀 등 주요 문화시설의 운영과 공연·전시 및 문화예술 진흥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6년 10월 개관한 진해아트홀의 본격적인 운영으로 시설관리와 공연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진해아트홀의 본격적인 운영에 따른 출연금 증액은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시설 확대로 인한 재정 부담도 함께 커질 수 있음. 따라서 진해아트홀의 운영계획과 소요경비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정원 111명 중 현원 101명인 인력 여건을 고려한 인력 배치와 기존 시설의 운영 효율성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재단법인 창원FC

○ 창원FC의 2027년도 출연금은 31억 2,1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함. 지역 연고 축구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유소년 축구 육성은 지역 체육 발전과 시민의 체육활동 참여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됨.

○ 그러나 자체수입은 전년 대비 1억 5,490만 원(54.2%) 감소하였고, 전체 수입에서 시 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91.6%에서 96.0%로 높아졌음. 이는 구단 운영에서 시 출연금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중장기적인 재정 안정성 측면에서 우려되는 부분임.

○ 특히 광고료 수익 감소와 홈경기 무료입장 전환에 따른 입장료 수입 미편성 등을 고려할 때, 자체수입 감소에 대응할 후원·광고 유치와 관중 확대 방안이 실효성 있게 마련되어야 할 것임. 향후 예산심사

에서는 이러한 수입 여건과 선수단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금 지원의 적정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음.

□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두 출연기관의 설립목적과 수행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재정지원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출연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제출된 출연금액의 적정성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지방의회의 사전 의결은 출연 여부를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 자체를 확정하는 것은 아님. 따라서 구체적인 출연 규모와 세부사업별 예산은 본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임.

○ 이에 따라 2027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는 창원문화재단의 진해아트홀 운영에 따른 추가 재정수요와 창원FC의 자체수입 감소에 따른 재정의존도 상승 등 기관별 여건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출연금이 각 기관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에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판단해야 할 것임.

4. 질의·답변 요지: 기재 생략

5. 토론 요지: 없음

6. 심사 결과: **원안 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부대의견, 건의 사항, 촉구사항 등): 없음